

#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규정(3-5-12)

제1조 (목 적) 본 규정은 학칙 37조 3항에 의한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 의) 특별학점은 정규 교과목 이외에 어학 및 자격시험, 특별과정 등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특별히 인정되는 학점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(신설 : 2008. 3. 27)

① 특별시험은 대학에서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성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(개정 2008. 3. 27)

② 공인된 어학시험, 자격취득시험,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해당과목의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(개정 2001. 8. 8)(개정 2008. 3. 27)

③ 특별과정은 본부 또는 본 대학 부설 교육원(센터)과의 협의에 의하여 특별히 개설된 과정에 한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(예비대학과정 포함).

(개정 2001. 8. 8)

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학점 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(개정 2008. 3. 27)

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사관리팀장이 된다.
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특별시험 및 학점인정 교과목 지정에 관한 사항
2. 특별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
3. 기타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

제5조 삭제(2008. 3. 27)

제6조 (성적인정범위) ① 특별시험의 합격은 80점(100점 만점) 이상으로 하며,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다.

시 험 성 적	등 급
95 이상	A +
90 ~ 94	A 0
85 ~ 89	B +
80 ~ 84	B 0

② 어학시험, 자격취득시험 등에 의한 특별학점의 성적인정범위는 사회봉사 활동실적 및 특별학점 등에 의한 특별학점의 성적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(개정 2005. 5. 1)

(개정 2008. 3. 27)

③ 특별학점 취득에 의한 성적은 당해 학년,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에 가산한다. 단, 장학사 정에서는 제외한다. (개정 2001. 12. 1) (개정 2005. 5. 1.)

④ 특별학점 성적의 취소는 소정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.(변경 : 2008. 3. 27)

⑤ 특별학점은 학칙 제38조의 1항 학기별 이수학점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되, 재학 중 총 6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(개정 2001. 12. 1)(개정 2005. 5. 1)(개정 2008. 3. 27) (개정 2016. 6. 30.)

제7조 (특별학점인정 및 신청시기) ① 특별학점 신청은 매학기 개강부터 종강 전 까지로 하며 신청과목은 해당학기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.

② 특별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기 성적처리 일정에 준한다.

③ 삭제 (개정 2005. 5. 1)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특별학점 인정기준표

### 1. 평생교육대학 개설 교과

교과목명	인정시험점수 또는 자격증내역	성적(등급)
매직토익I	정규토익 450점 이상	A+
	정규토익 400점~449점	A0
	정규토익 350점~399점	B+
	정규토익 300점~349점	B0
매직토익II	정규토익 550점 이상	A+
	정규토익 500점~549점	A0
	정규토익 450점~499점	B+
	정규토익 400점~449점	B0
매직토익III	정규토익 650점 이상	A+
	정규토익 600점~649점	A0
	정규토익 550점~599점	B+
	정규토익 500점~549점	B0
미술치료 (※재이수 불가)	아동미술심리지도사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95점 이상	A+
	아동미술심리지도사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90점~94점	A0
	아동미술심리지도사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85점~89점	B+
	아동미술심리지도사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80점~84점	B0
상담심리학 (※재이수 불가)	심리상담사2급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95점 이상	A+
	심리상담사2급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90점~94점	A0
	심리상담사2급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85점~89점	B+
	심리상담사2급 I또는II의 자체평가결과 80점~84점	B0

## 2. 교양필수(IT 영역) 개설 교과

교과목명	인정시험점수 및 자격증내역	성적(등급)
컴퓨터 I - 문서작성	ITQ 한글 및 파워포인트 모두 A등급	A0
	ITQ 한글 및 파워포인트 중 1과목 A등급	B+
	ITQ 한글 및 파워포인트 모두 B등급	B0
컴퓨터 II - 스프레드시트	ITQ 엑셀 A등급	A0
	ITQ 엑셀 B등급	B0
컴퓨터 III - 인터넷	ITQ 인터넷 A등급	A0
	ITQ 인터넷 B등급	B0
컴퓨터 IV - 액세스	ITQ 액세스 A등급	A0
	ITQ 액세스 B등급	B0

### ※ IT영역 세부인정등급

자격명	등급	인정자격
ITQ 한글	A	ITQ 한글 A등급 워드프로세스 1급 e-Test Professional 워드1급 MOS워드 Expert
	B	ITQ 한글 B등급 워드프로세스 2급 e-Test Professional 워드2급 MOS워드 Core
ITQ PPT	A	ITQ PPT A등급 MOS PPT Core800점이상 e-Test Professional PPT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PCT800점이상
	B	ITQ PPT B등급 MOS PPT Core800점미만 e-Test Professional PPT 2급 PCT800점미만
ITQ 엑셀	A	ITQ 엑셀 A등급 컴퓨터활용능력1급(2급) MOS엑셀 Expert 사무자동화산업기사 e-Test Professional 엑셀1급 PCT800점이상
	B	ITQ 엑셀 B등급 MOS엑셀 Core e-Test Professional 엑셀2급 PCT800점미만

### 3. 취창업동기유발 교과

교과목명	이수구분	인정기준	성적(등급)
동기유발(취창업)	교양선택	30시간 이상	P

※ 취창업동기유발 교과는 2016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

### 4.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

과정명	이수구분	인정기준	성적(등급)
청년취업아카데미	교양선택	과정 수료	P

※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은 2017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